

감정평가서

건명	백은주 외 1명 소유물건 (2025타경50266)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
감정서번호	251-0114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솔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	삼억삼천삼백이십이만팔천원정 (₩333,228,000.-)		
-------	---------------------------------	--	--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윤규석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백은주 외 1명 (2025타경5026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5.01.31	2025.01.15 ~ 2025.01.31
		작성일	2025.01.3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79 412x--- 412	토지	11,331	-	332,328,000
제시외 수목	10,952 (1식)	수목	1식	-	900,000	
합계					₩333,22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및 근거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근면 소근리 소재 "소근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II.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01.31일 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5.01.15일부터 2025.01.20일까지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Ⅲ.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1. 감정평가의 방법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 1)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2)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3)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4)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토지의 평가

- 1)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본건 토지는 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3. 기타사항

- 1)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 2) 일련번호(1)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지분권자의 토지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박선희, 백은주 지분비율을 적용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V.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V. 그 밖의 사항

1. 본건의 지번, 지목, 면적 등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니 집행시 재확인 바람.
2. 본건 토지의 지적 경계는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경계, 면적 등의 관련사항은 필요한 경우 측량을 요함.
3. 일련번호(1) 토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제시외 수목(㉠)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소유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4. 일련번호(3)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로 추정되는 봉분이 소재하며 그 밖의 분묘 소재가능성이 있는바 필요시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 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함.
5. 일련번호(2,4)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복구명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며, 원상회복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I. 대상물건 개요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원/㎡) 2024.01.01	비 고
	1	소근리 156-10	도로	412.0×379/412	보전관리지역 도로	4,580	박선희 지분 백은주 지분
2	소근리 156-11	임야	820.0	보전관리지역 절토된 임야	5,230		
3	소근리 156-12	임야	9,679.0	보전관리지역 자연림	4,610		
4	소근리 156-13	임야	453.0	보전관리지역 절토된 임야	5,600		

※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II.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표준지 선정

【 공시기준일 : 2025년 01월 01일 】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소근리 산8-2	임야	14,281.0	자연림	보전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5,27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기호(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3. 시점수정

○ 기준시점 : 2025.01.31

표준지	용도지역	산정기간	시·군·구 계 산 식	시점수정치
A	보전관리 지역	2025.01.01 ~ 2025.01.31	충청남도 태안군 (25.01.01~25.01.31) (보전관리) 2024.12.01 ~ 2024.12.31 : 0.071 (1 + 0.00071 * 31/31) = 1.00071	1.00071

- 2025년 1월 자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4년 12월 자가변동률로 일할 계산하였음.

4. 지역요인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속한 지역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인근지역인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5. 개별요인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폭·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 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교 표준지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소계
1	소근리	156-10	도로	A	-	1.20	0.70	-	1.00	1.00	0.840
					일련번호(1)은(는)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형상, 경사, 이용상황 등 고려)에서 열세함.						
2	소근리	156-11	임야	A	-	1.20	2.00	-	1.00	1.00	2.400
					일련번호(2)은(는)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형상, 경사, 인근환경 등 고려)에서 우세함.						
3	소근리	156-12	임야	A	-	1.15	0.95	-	1.00	1.00	1.093
					일련번호(3)은(는)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형상, 경사, 인근환경 등 고려)에서 열세함.						
4	소근리	156-13	임야	A	-	1.20	1.20	-	1.00	1.00	1.440
					일련번호(4)은(는)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형상, 경사, 인근환경 등 고려)에서 우세함.						

6.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그 밖의 요인 검토방식

$$\text{그 밖의 요인} = \frac{\text{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액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다. 가격자료의 선택

1)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및 KAIS]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m ²)	평가목적 실거래	기준시점 거래시점 (계약일)	비고
가	영전리 산1**-*	임야	보전관리지역	21,000	경매	2024.01.03	
나	법산리 4**-**	임야	보전관리지역	54,000	경매	2023.12.14	
다	송현리 산2*-*	임야	보전관리지역	27,207	실거래	2023.04.18	

2) 가격자료의 선택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지리적 위치 등에서 유사한 사례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위 기호(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기로 하였음.

라. 시점수정

사례 기호	시·군·구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가	충청남도 태안군 보전관리지역	2024.01.03 ~ 2025.01.31	0.645%	1.00645

마.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사례 토지가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바. 개별요인

비교표준지		사례		개별요인						
기호	소재지	기호	소재지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계
A	소근리 산8-2	가	영전리 산1**-*	-	1.15	1.00	-	1.00	1.00	1.150
비교내용		표준지(A)는 사례(가) 대비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사. 격차율 산정

표준지	사례	소재지	용도지역 지 목	단가(원/m ²)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가격	격차율
	비교 표준지								
A	가	영전리 산1**-*	보전관리 임야	21,000	1.00645	1.00	1.150	24,305	4.609
	A	소근리 산8-2	보전관리 임야	5,270	1.00071	-	-	5,273	

아.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에서 산정된 격차율 검토 결과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기타 참고자료 등 제반 가격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기 격차율의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적용하였음.

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4.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7. 토지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1	소근리	156-10	도로	A	5,270	1.00071	1.000	0.840	4.60	20,000
2	소근리	156-11	임야	A	5,270	1.00071	1.000	2.400	4.60	58,000
3	소근리	156-12	임야	A	5,270	1.00071	1.000	1.093	4.60	27,000
4	소근리	156-13	임야	A	5,270	1.00071	1.000	1.440	4.60	35,000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면적(㎡)	적용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1	412.0×379/412	20,000	7,580,000	박선희 지분 백은주 지분
2	820.0	58,000	47,560,000	
3	9,679.0	27,000	261,333,000	
4	453.0	35,000	15,855,000	
합계			<u>332,328,000</u>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가.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토지단가(원/m ²)	거래시점 (계약일)	비고
다	송현리 산2*_*	임야	보전관리지역	27,207	2023.04.18	

나. 선정사유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기호(다)를 비교 사례자료로 선정함.

3. 사정보정

비교 거래사례의 거래과정에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음.(1.00)

4.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 기호	시·군·구 용도지역	산정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다	충청남도 태안군 보전관리지역	2023.04.18 ~ 2025.01.31	1.022%	1.01022

5.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6. 개별요인

일련 번호	사례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계
1	다	-	1.10	0.70	-	1.00	1.00	0.770
	일련번호(1)은(는) 사례(다)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형상,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2	다	-	1.10	2.00	-	1.00	1.00	2.200
	일련번호(2)은(는) 사례(다)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형상, 경사, 인근 환경 등 고려)에서 우세함.							
3	다	-	1.05	0.95	-	1.00	1.00	0.998
	일련번호(3)은(는) 사례(다)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형상, 경사, 인근환경 등 고려)에서 열세함.							
4	다	-	1.10	1.20	-	1.00	1.00	1.320
	일련번호(4)은(는) 사례(다)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상태 등) 및 자연조건(형상, 경사, 인근 환경 등 고려)에서 우세함.							

7. 토지단가의 산정

일련 번호	사례 기호	비교사례 단가(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m ²)
1	다	27,207	1.00	1.01022	1.000	0.770	21,000
2	다	27,207	1.00	1.01022	1.000	2.200	60,000
3	다	27,207	1.00	1.01022	1.000	0.998	27,000
4	다	27,207	1.00	1.01022	1.000	1.320	36,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면적(m ²)	적용단가(원/m ²)	시산가액(원)	비고
1	412.0×379/412	21,000	7,959,000	박선희 지분 백은주 지분
2	820.0	60,000	49,200,000	
3	9,679.0	27,000	261,333,000	
4	453.0	36,000	16,308,000	
합계			334,800,000	

IV.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평가방법	시산가액(원)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332,328,000	
거래사례비교법	334,800,000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제11조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상부동산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표

3.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면적 (m ²)	적용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1,331.00	-	332,328,000	
제시외 수목	1식	-	900,000	
합계			<u>333,228,000</u>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0	도로	보전관리지역	379 412x--- 412	379	20,000	7,580,000	박선희 지분 백은주 지분
2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1	임야	보전관리지역	820	820	58,000	47,560,000	
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2	임야	보전관리지역	9,679	9,679	27,000	261,333,000	
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3	임야	보전관리지역	453	453	35,000	15,855,000	
소 계								₩332,328,000	
ㄱ	[제시외 수목]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0 위 지상	수목	조경수	(1식)	1식	-	900,000	
소 계								₩900,000	
합 계								₩333,22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소재 "소근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북동측 인근으로 소근로가 통과하고 북동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을 고려할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1) 일련번호(1) :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임.
- 2) 일련번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된 임야임.
- 3) 일련번호(3) :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 4) 일련번호(4) :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절토된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 1) 일련번호(1) : 본건을 도로로 이용 중임.
- 2) 일련번호(2,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3) 일련번호(4) : 일련번호(1)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젓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 (2) 교통상황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3) 형태 및 이용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2) 일련번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젓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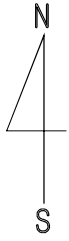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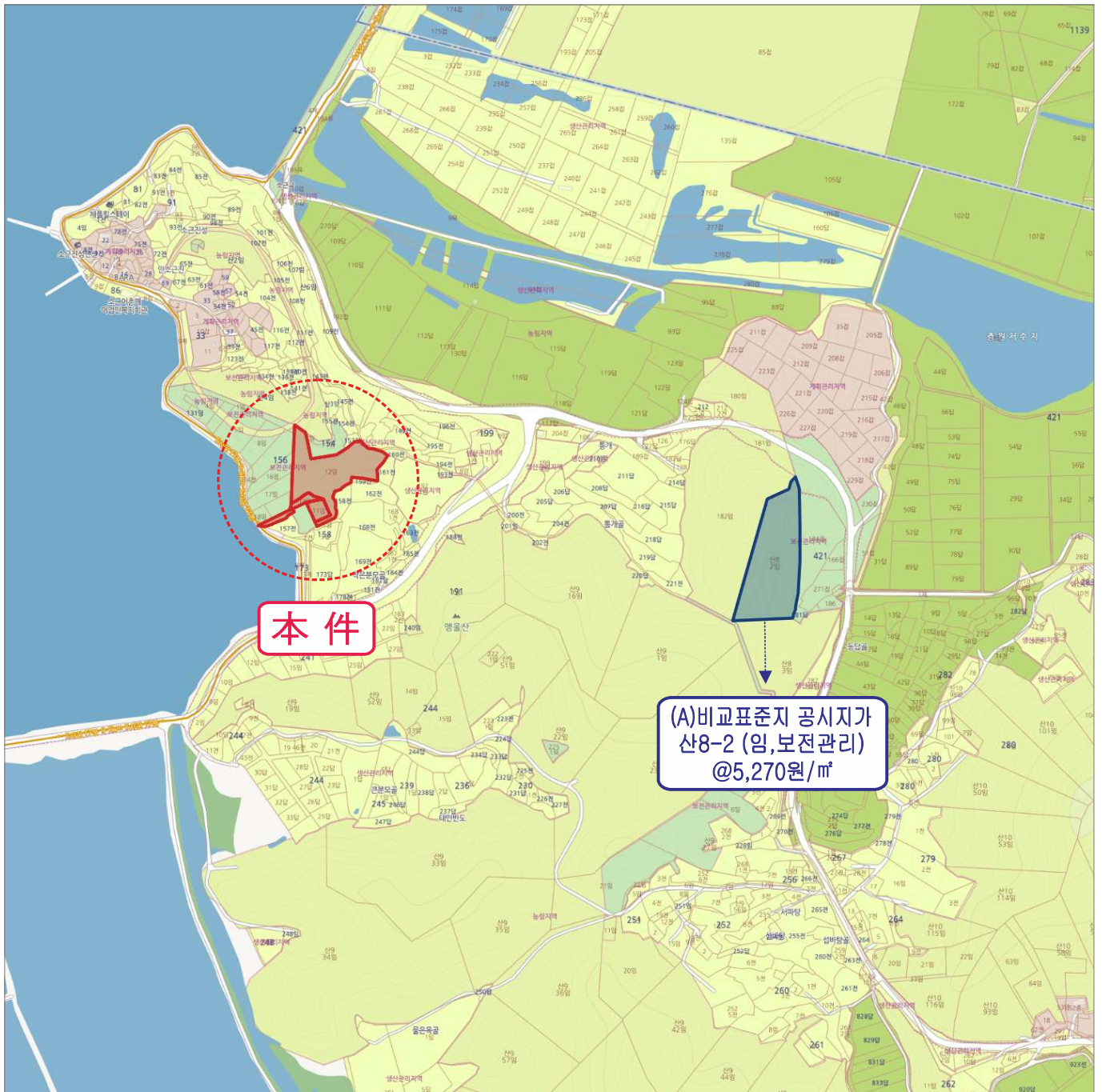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일련번호(3)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로 추정되는 봉분이 소재함.

위 치 도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0외





(1~4) -



(1~4) -



(1)



(2)_1



(2)_2



(4)



(1)_



(3)_